**가계약 해제권 유보 및 가계약금 반환 특약**

매도인 000가 매수인 000 에게 000아파트(주소 :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)를 매도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이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의 내용에 합의합니다.

* 아 래 -

1. 당사자 일방은 정식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본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2.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000원은 가계약금이고, 위와 같이 본 특약에 기하여 본 가계약에는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본 가계약금은 해약금도 아니고, 위약금도 아니다.

3. 당사자 일방이 본 가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본 가계약은 즉시 해제되며,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가계약금을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.

2022년 0월 0일

매도인 : (인)

주 소 :

연락처 :

매수인 : (인)

주 소 :

연락처 :